

부속연구기관 설립 및 운영 지침

KAU 한국항공대학교

개정 기록표

번호	개정일자	개정자 (서명)	번호	개정일자	개정자 (서명)
1	2016.2.29.		16		
2	2016.10.28		17		
3	2023.12.18		18		
4			19		
5			20		
6			21		
7			22		
8			23		
9			24		
10			25		
11			26		
12			27		
13			28		
14			29		
15			30		

부속연구기관 설립 및 운영 지침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한국항공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부속연구기관의 설립 및 운영규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소장(센터장)) 부속연구기관 소장(센터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직제규정 <별표 1> 부속연구기관 및 센터의 보임기준에 따르며,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12.18>

제3조 (연구원 관리) ① 부속연구기관 소속연구원 임명은 부속연구기관 소장이 연구협력처(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로 요청하며 총장 승인 후 임명한다.

② 부속연구기관 소속 전임교원이 변동되거나 신규 추가 될 경우 소장은 주관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 (평가계획 및 수립) 부속연구기관 평가는 매년 시행하며, 주관부서에서는 다음 각 항의 내용에 따라 평가 계획을 수립하며, 학술연구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확정한다.

- ① 평가 대상 부속연구기관
- ② 평가 일정
- ③ 평가 항목 및 평가점수
- ④ 평가 결과 발표
- ⑤ 평가 결과 활용
- ⑥ 기타 평가에 부수되는 사항

제5조(평가계획 통보) 주관부서에서는 평가계획을 평가대상 연구기관에 통보한다.

제6조(평가자료 제출) 부속연구기관은 정해진 일정에 따라 부속연구기관 실적평가서 [서식1]을 작성하여 주관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평가기준 및 심의) ① 학술연구비 심의위원회에서 평가기준에 따라 각 부속연구기관을 평가하며 평가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심의한다.

② 부속연구기관의 2년 연속 평가 실적이 기준 이상인 경우 학술연구비 심의위원회를 거쳐 총장 승인 후 자립운영 연구소는 대학부속 연구소로, 자립운영 유예연구소는 자립운영 연구소로 승격될 수 있다.

③ 부속연구기관의 2년 연속 평가 실적이 기준 미달일 경우 학술연구비 심의위원회를 거쳐 총장 승인 후 대학부속 연구소는 자립운영 연구소로, 자립운영 연구소는 자립운영 유예연구소로 강등되며, 자립운영 유예연구소는 해산된다.

④ 최종평가점수를 달성하지 못하였다도 교외연구비 수주실적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 후 재심이 고려될 수 있다.

⑤ 실적평가서를 미제출하는 연구기관은 기준미달로 판정된다.

⑥ 평가점수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부속연구기관 평가지침 [별첨1]을 따른다.

제8조(운영) ① 부속연구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운영경비는 부속연구기관 명의로 계약된 과제의 간접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항목은 [별첨3]을 따르며 기타 운영비의 신청·관리와 그에 따른 구

매· 지급· 회계처리 등의 기준은 우리 대학 각종 규정을 따른다.

- ② 연구협력처에서 지원하는 부속연구기관 운영비는 대학부속 및 자립운영 연구기관에만 해당되며, 자립운영유예의 연구기관은 유예기간 중 운영비를 자체 조달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③ 삭제 <2016.2.29>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2월 3일부터 시행하되, 2014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단, 제7조 평가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는 2017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2. (시행일) 이 개정된 지침은 2016년 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3. (시행일) 이 개정된 지침은 2016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하되, 부속연구기관 평가지침[별첨1]은 2016학년도 평가부터 적용한다.
4. (시행일) 이 개정된 지침은 2023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하되, 2023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첨1> <개정 2016.10.28>

부속연구기관 평가지침

1. 반영비율

유형	평가항목				계
	연구비 수주	연구성과	연구기관 활동	대학발전 기여	
A형	50	30	10	10	100
B형	30	40	20	10	100
C형	10	50	30	10	100

※ C형은 인문사회계열 부속연구기관만 선택 가능

2. 평가방법

가. 연구협력처에서 「3. 평가항목별 배점기준」에 의거 1차 평가 후, 학술연구비심의위원회 위원이 최종평가 한다.

나. 최종평가의 기준점수는 다음과 같다.

- 1) 대학부속연구소 : 80점이상
- 2) 자립운영 연구소 : 60점이상 ~ 80점미만
- 3) 자립운영 유예연구소 : 40점이상 ~ 60점미만

다. 각 평가항목별 평가 점수 기준은 [별첨2]와 같다.

라. 평가항목별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0점'으로 평가된다.

마. 평가항목(3, 4번) “연구기관활동”, “대학발전 기여”의 세부심의사항은 학술연구비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3. 평가항목별 배점

평가항목	평가세부항목	점수			비고
		A형	B형	C형	
1. 연구비 수주	교외 연구비 수주	50	30	10	정량평가
2. 연구성과*	학술지논문(업평2) 또는 저서(업평 3.1~3.3)	30	40	50	
	국제/국내특허(업평5.1) 기술이전 실적(업평 5.2)				
3. 연구기관 활동	워크숍, 세미나, 학술대회 개최 등	10	20	30	정성평가
4. 대학발전 기여	연구기관이 대학 발전기여한 기타 연구활동 실적으로 1~3. 제외사항을 정성적으로 기술 예) 교외 수상실적, 소식지 발간, 기술기고 등	10	10	10	
계		100	100	100	

※ *연구성과는 교원업적평가규정시행세칙 <별표 2> 연구업적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업평 No.” 별표 2의 평가번호임

<별첨 2> 삭제<2016.10.28>

<서식1>

부속연구기관 실적평가서

(부속연구기관)명

평가유형 : (A, B, C)형

※ A, B, C 유형 중 선택하여 ()기입

20 . . .

소장(센터장)

(인)

1. 연구비 수주

1.1 교외연구비 수주

번호	과제번호	과제명	연구 책임자	지원기관	연구기간		연구비(백만원)
					시작일	종료일	
1							
합계	총 금액						
※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연구처 확인 ※ 평가점수 산정 = 연구기관 소속 전임교원 인당 교외연구비 수주액(순수위탁연구비 제외) ※ 연구기관 소속 전임교원이 책임으로 소속 연구기관 명의로 수주한 연구비로 대학 중앙관리 연구과제에 한하며, 다년도 과제는 당해년도 연구비에 한함 ※ 배점기준							
평가 유형	인당 교외연구비수주액(단위 : 백만원) (평가점수)						
A형	50이상	50미만~40이상	40미만~30이상	30미만~20이상	20미만~15이상	15미만 (기본값)	실적 없음
	(50점)	(49점~40점)	(39점~30점)	(29점~20점)	(19~15점)	(10점)	(0점)
B형	30이상	30미만~25이상	25미만~20이상	20미만~15이상	15미만~10이상	10미만 (기본값)	실적 없음
	(30점)	(29점~25점)	(24점~20점)	(19점~15점)	(14점~10점)	(6점)	(0점)
C형	10이상	10미만~9이상	9미만~8이상	8미만~7이상	7미만~6이상	6미만 (기본값)	실적 없음
	(10점)	(9점)	(8점)	(7점)	(6점)	(2점)	(0점)
※ 기본값 구간을 제외하고 인당 교외연구비수주액이 만점기준 백만원 단위 당 1점의 편차로 배점							

2. 연구성과

2.1 학술지논문(교원업적평가 규정시행세칙 <별표 2> 평가번호 2. 실적)

번호	논문명	학술지 명	교수명	학과	게재 년월	등급	국내외	총 저자 수	점수
1									
소 계									

2.2 저서(교원업적평가 규정시행세칙 <별표 2> 평가번호 3.1~3.3 실적)

번호	저서명	출판사	저자명	학과	저자구분 (주or공동)	국내외	발간년월	총 저자 수	점수
1									
소 계									

2.3 국제/국내특허(교원업적평가 규정시행세칙 <별표 2> 평가번호 5.1. 실적)

번호	특허명/ 실용신안 명/ 소프트웨어 명	발명자	학과	특허 등록(출원)		실용신안/소프트웨어		국내외	발명자수	점수
				등록(출원) 번호	등록(출원) 년월	등록번호	등록년월			
1										
소계										

2.4 기술 이전 실적(교원업적평가 규정시행세칙 <별표 2> 평가번호 5.2. 실적)

번호	기술 명칭	책임자	대상 기관	계약일자	수입액(원)	점수
1						
소계						

총점						
----	--	--	--	--	--	--

- ※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연구처 확인
- ※ 본교 교원업적평가기준에 따라 산정
- ※ 평가점수 산정 = 연구기관 소속 전임교원 논문, 저서, 특허, 기술이전 실적의 인당 점수
- ※ 배점기준

평가 유형	2.1~2.4 인당 업적평가점수(단위 : 점) (평가점수)						
	A형	36 이상 (30점)	36미만~30이상 (29점~24점)	30미만~24이상 (23점~18점)	24미만~18이상 (17점~12점)	18미만~12이상 (11점~6점)	12미만 (기본값) (4.8점)
B형	48 이상 (40점)	48미만~40이상 (39점~32점)	40미만~32이상 (31점~24점)	32미만~24이상 (23점~16점)	24미만~16이상 (15점~8점)	16미만 (기본값) (6.4점)	실적 없음 (0점)
C형	60 이상 (50점)	60미만~50이상 (49점~40점)	50미만~40이상 (39점~30점)	40미만~30이상 (29점~20점)	30미만~20이상 (19~10점)	20미만 (기본값) (8점)	실적 없음 (0점)

※ 기본값 구간을 제외하고 인당 업적평가점수(2.1~2.4)가 만점기준 1점 단위 당 1점의 편차로 배점

3. 연구기관 활동

3.1 워크숍, 세미나, 학술대회 개최실적 등

번호	명칭	참여기관	개최기간	장소	참석자수	비고
1						
합계	총 개최건수 : 건					

- ※ 연구기관에서 직접 제출
- ※ 연구기관명이 명기된 관련 증빙자료 첨부 시 점수가 인정
- ※ 배점기준
 - A형 : 워크숍, 세미나 5점/건, 학술대회 개최실적 10점/건, 학술연구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기타 연구기관활동은 5점/건
 - B, C형 : 워크숍, 세미나 10점/건, 학술대회 개최실적 20점/건, 학술연구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기타 연구기관활동은 10점/건

4. 대학 발전 기여

- ※ 연구기관에서 직접 기술
- (1.~3. 평가항목을 제외한 교외 수상실적, 소식지 발간 등 연구기관이 대학의 발전에 기여한 기타 연구활동실적을 요약하여 기술(10점 내)

<별첨3> 부속연구기관 운영비 지원항목

항목		내용
연구장비· 재료비	연구기기·장비비	- 연구기관의 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 사용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 경비
	시약·재료 구입비, 전산처리비	- 연구기관의 연구에 필요한 직접소모성 시약 및 재료비(시험분석료 포함), 정보 D/B 사용료, 외부 전산시스템 사용료
	시제품·시작품· 시험설비 제작경비	- 연구기관의 연구수행에 필요한 시제품, 시작품, 시험설비 제작경비
연구활동비 및 연구과제 추진비	국내외 여비	- 연구기관 소속 전임교원 및 연구원 국내외 출장에 대한 지원경비
	통역료 등	- 연구기관 소속 전임교원이 발간한 논문에 대한 번역 및 교정료 등
	학회·세미나 참가비	- 연구기관 소속 전임교원 및 연구원 국내외 학술대회·세미나 참가경비 - 연구기관 소속 전임교원 및 연구원 학회회비 * 학회 회비 중 가입비는 제외
	인쇄·복사비 등	- 연구기관의 인쇄·복사 인화 슬라이드 제작비
	사무용품비 등	- 연구기관의 사무용품 및 각종 소모성 물품
	연구환경 유지비	- 연구기관의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 연구기관의 단순 미관 유지·개선비는 지원 제외
	회의비	- 연구기관 회의에 소요되는 다과비 및 식대 - 연구기관 회의를 위한 회의장 사용료
연구활동 지원금	논문 게재료 - 연구기관 소속 전임교원이 발간한 논문에 대한 게재료 및 심사료 ※ 산학협력단의 교원 논문 게재료 지원 및 연구과제와 중복지원 불가	
성과활용 지원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 연구기관의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유지 등에 필요한 경비 ※ 산학협력단의 지식재산권 비용 지원과 중복지원 불가하나 자부담 항목은 지원가능 (개인명의 특허는 지원불가)	
기타	- 그 밖에 연구기관의 연구·운영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비용 - 개인성 경비로 판단되는 부분은 지원 불가	